

서울교육대학교와 동아일보사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동아일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서울교육대학교와 동아일보사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상생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.

제3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.

1. 미래형 예술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콘텐츠 개발 협력
2. 양 기관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
3.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(효력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,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①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본 협약서의 개정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어느 일방이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1. 본 협약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
2. 공동 협력사업 평가 결과 협력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
3. 기타 양 기관 협력 사업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

제6조(비밀유지)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조의 의무는 협약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된다.

제7조(기타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하에 정한다.

본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 기관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. 11. 14.



서울교육대학교
총 장 장 신 호



동 아 일 보 사
대표이사 임 채 청

